

# 주차장 운영 및 이용요금에 관한 내규

2017.03.01. 제정

**제1조(목적)** 본 내규는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(이하 본교) 주차장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이 규정은 본교에 출입하는 차량에 적용되며, 다른 규정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**제3조(이용차량)** 본 주차장의 이용차량은 원칙적으로 본교의 교직원, 재학생 및 수강생 차량에 한한다.

**제4조(주차요금)** 주차요금 기준 및 납부방법은 별표1과 같다.

**제5조(손해배상)** 주차장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본교 내 시설물이나 타인의 차량 등에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을 경우 그 피해를 원상복구 하거나 적절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손해배상 면책)** 주차장 이용 중에 발생한 제반피해에 대하여는 본교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<별표1>

## 주차장 이용요금

구분		주차장이용	이용료	납부방법	비고
정기 이용자	재학생	정기주차	학기당 100,000원 (3월~8월, 9월~2월)	학기 초 일시금 납부	
		일일주차	1일 3,000원	행정실에서 일일주차권 구입	
	수강생	정기주차	해당 기관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름	해당 기관에서 주차권 구입	
주차료 중도환불		휴학, 자퇴 등 기타 사유로 정기주차이용 포기시 환불은 월단위로 하며 잔여일수의 주차료는 환불하지 않음			

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